

근로복지공단, 직업훈련 받는 실업자에게 연 1% 저금리로 생계비 1천만 원 대부

- 실업자, 비정규직 근로자, 무급휴직자, 고용보험 가입 자영업자에게 직업훈련생계비 대부사업 실시
- 직업훈련생 총 17만 명에게 생계비 7,500억 원 저리로 대부 지원

30대 김OO 씨는 전에 다니던 직장을 퇴사하고 직업훈련을 받는 동안 소득이 없어 생계가 곤란했는데 근로복지공단에서 연 1% 금리로 1천만 원을 대출받아 직업훈련에만 전념할 수 있었다. 결국 6개월 만에 지게차 자격증을 취득해 전 직장보다 훨씬 높은 급여로 이직에 성공했다.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실업자 등에게 직업훈련 기간에 필요한 생계비를 저금리로 대부하여 경제적 어려움 없이 직업훈련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생계비 대부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2009년부터 현재까지 직업훈련생 총 17만 명에게 생계비 7,500억 원을 저리로 지원했다.

직업훈련생계비 대부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정하는 총 140시간 이상의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실업자, △비정규직 근로자 △무급휴직자, △고용보험에 가입 중인 자영업자가 신청할 수 있다.

소득기준 요건도 충족해야 하는데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20세 이상 가구원 합산 월 소득이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여야 한다. 국가기관·전략산업직종훈련·첨단산업 디지털 핵심실무인재 양성 훈련 참여자와 중장년 내일센터 프로그램 수료자는 중위소득 100% 이하로 우대 적용된다.

< 2025년도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80%	1,913,610원	3,146,126원	4,020,282원	4,878,218원	5,686,554원
100%	2,392,013원	3,932,658원	5,025,353원	6,097,773원	7,108,192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보호종료아동(자립준비청년)은 소득과 관계 없이 신청할 수 있다.

대부 한도는 1인당 총 1천만 원이고 특별재난지역 대상자는 총 2천만 원이다. 월별로는 최소 50만 원에서 최대 200만 원까지 가능한데 총 대부 금액은 대부 한도 내에서 훈련기간에 따라 결정된다.

대부 금리는 연 1%로 매우 저렴하다. 상환 방법은 1년 거치 후 3년간, 2년 거치 후 4년간, 3년 거치 후 5년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할 수 있다. 최대 8년 동안 빌려 쓸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신청 절차는 근로복지넷(welfare.comwel.or.kr)에 접속 후 ‘나의 자격조건 알아보기’ 메뉴에서 본인의 대부 신청 자격을 확인한 후에 자격이 충족된 경우 온라인에서 대부를 신청하면 된다.

근로복지공단 박종길 이사장은 “공단의 직업훈련생계비 대부사업이 실업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담당 부서	복지연금국 복지계획부	책임자	부 장	김혜경 (052-704-7301)
		담당자	팀 장	전정순 (052-704-7306)





2025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안내

 

돈 걱정 없이
직업훈련에 집중하실 수 있도록
저금리로 생계비를 빌려드립니다!

실업자·비정규직 등을 위한 훈련기간 중 50~200만원

 **신청자격**
140시간 이상의 고용노동부 인정 직업훈련에 참여중인 훈련생

 **소득요건**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

 **대부한도**
대부한도 | 총 1,000만원(월 200만원)
상환조건 | 금리 연 1.0%, 1~3년 거치 3~5년 분할상환(신용보증료 연 1.0% 별도)

 **문의·상담**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 1588-0075



* 직업훈련생계비 대부대상 근로자를 위한 **신용보증 지원사업**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복권기금」으로 지원됩니다.

신청자격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정하는 총 140시간 이상의 직업훈련에 참여 중이며, 대부대상월의 훈련일수가 15일 이상일 경우



실업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자 중 실업상태에 있는 자



비정규직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비정규직근로자(기간제, 단시간, 파견, 일용근로자)



무급휴직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근로자로서 휴직수당 등 금품을 받지 않고 휴직중인 자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고용보험법 제2조 제1호 나목에 따른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중인 자

- 제외 대부한도액까지 대부 받은 자, 실업급여 수급 중인 자
- 신청 제한 한국 신용정보원 연체정보 등록자(연체·회생·파산·신용회복 등), 외국인, 재외동포, 기업은행에 연체 정보, 특수채권 잔액이 있는 경우 등

대상훈련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하는 아래의 훈련으로서, 총 140시간 이상의 집체 및 비대면 실시간 원격 훈련

* 콘텐츠 재생형 원격훈련은 제외

- 01 「국민평생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에 의해 지원되는 국민내일배움카드 과정,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폴리텍 직업훈련과정
- 02 「고용보험법」 및 「국민평생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해 지원되는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훈련과정
- 0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설치한 공공직업훈련시설에서 취업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훈련
- 04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건설일용근로자의 기능 향상을 위하여 실시하는 훈련
- 0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2조 및 제92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훈련 또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1조 및 제12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훈련

총 140시간 이상의 훈련 : 훈련개시일과 종료일(공휴일 및 주말 포함)까지의 총 훈련시간이 140시간 이상인 훈련을 의미하며, 대부대상월의 훈련기간이 15일 이상이어야 함

국가기간 · 전략산업직종훈련, 첨단산업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 참여자 및 중장년 내일센터 프로그램 수료자의 경우 중위소득 100%기준 적용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30일 이상의 고용보험 피보험 일용근로내역이 있는 건설일용노동자가 12월부터 2월 사이에 2주 이상의 훈련을 수강하는 경우, 대부대상월 훈련일이 8일 이상인 경우 인정

대상 훈련과정 확인

- ✓ 고용노동부 훈련과정 : www.hrd.go.kr
- ✓ 건설근로자공제회 훈련과정 : www.jobgohrd.or.kr

대부한도 및 상환조건

대부한도 월별 최소 50만원~최대 200만원
(1인당 총 한도 1천만원)
* 총대부금액은 1인당 대부한도 내에서 혼련기간에 따라 결정

대부금리 연 1.0%
* 신용보증료 연1.0% 별도 부담, 대부 실행 시 선 공제

상환기간 1년 거치 3년 매월 균등분할상환
2년 거치 4년 매월 균등분할상환
3년 거치 5년 매월 균등분할상환
중신청자 선택

우선적용 대상

✓ 특별재난지역(자연재해) 대상자

▶ 소득요건에 관계없이 인당 총 한도 2,000만원
(월 200만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보호종료아동

▶ 소득요건 무관(증빙서 제출 필요)

접수방법 및 처리절차

접수 방법

혼련월의 다음달 1일~10일(휴일인 경우 평일인 익일) 접수

*신청기한 지난 혼련월은 소급 신청 불가

유형	신규	추가
	혼련에 대한 1회, 최초 대부 신청 - 총 신청금액 ÷ 혼련개월수 보증서 발행	동일 혼련에 대한 2회차 이후 대부금 신청 - 신규 신청서 정보(총 신청 개월수) 연계 후 보증서 추가 발행 - 매 월별 신청 필요
창구	인터넷 근로복지넷 https://welfare.comwel.or.kr	방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복지사업부 및 지사 경영복지부 *팩스접수 불가

처리절차

고객	대부신청서 접수(혼련월의 다음달 1일~10일)
고객	구비서류 제출
공단	담당자 대부신청서 자격여부 심사 및 결정 (접수일로부터 7일)
공단	담당자 신용보증신청서 자격여부 심사 및 결정
공단	신용보증서 발행
고객	대출 실행 (결정일로부터 15일 이내, 기업은행 어플 통해 신청자가 직접 실행)



근로복지공단은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처리를 통한 국민권익제고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 청렴·윤리 경영을 실천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근로복지공단
Korea Workers' Compensation & Welfare Service

고객센터 | 1588-0075
근로복지넷 | welfare.comwel.or.kr